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

2. 특약의 적용근거

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
3. 특약의 적용범위

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
- (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- (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4. 기타

가.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
나.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